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3753 |
|----------|------|

발의연월일 : 2016. 11. 21.

발의자 : 조응천 · 송옥주 · 황주홍

김정우 · 김해영 · 김현미

김영춘 · 김상희 · 서영교

박남춘 · 우원식 · 윤관석

남인순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과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을 규정하여 최대한 신속히 현장에 도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신속한 출동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주차로 인하여 소방자동차가 신속히 현장의 소방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함.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소방자동차 외에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자동차의 현장 접근성 및 신속한 소방활동을 보장하여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및 제57조).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등) ① 공동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는 자는 공동주택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방대가 소방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제1항에 따른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제1항 중 “제1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

2.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한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1항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u><신 설></u> | <p>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 등) ① 공동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는 자는 공동주택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방대가 소방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p> <p>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제1항에 따른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제57조(과태료) ① 제1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 | <p>제5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p> <p>-----</p> |

| | |
|------------------------|--|
| 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
| <u><신 설></u> | 1. <u>제1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u> |
| <u><신 설></u> | 2. <u>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한 사람</u>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